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370호 2014. 12. 9.(화)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119호 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2
- 사천시 조례 제1120호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 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7
- 사천시 조례 제1121호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9
- 사천시 조례 제1122호 사천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11
- 사천시 조례 제1123호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4
- 사천시 조례 제1124호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 24
- 사천시 조례 제1125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 36
- 사천시 조례 제1126호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 -45
- 사천시 조례 제1127호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 54
- 사천시 조례 제1128호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 ----- 64
- 사천시 조례 제1129호 사천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 66
- 사천시 조례 제1130호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 67
- 사천시 조례 제1131호 사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75
- 사천시 조례 제1132호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85

규 칙

- 사천시 규칙 제570호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 86

훈 령

- 사천시 훈령 제287호 사천시 공무원정보화능력 평가 규정 폐지규정 ----- 87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편집 : 기획감사담당관실 ☎ 831-2215·FAX 831-6011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2)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11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사천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3)

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한다.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등)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발굴·추진한다.

② 시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교육
2. 직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3. 응급구호 및 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지원
5.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조기 적응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4)

④ 시장은 제3항의 사항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설치)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사천시 북한이탈주민 지원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은 부시장,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1. 사천시청, 사천교육지원청, 사천경찰서, 진주고용노동지청, 민주평통 사천시협의회, 대한적십자사 사천지구협의회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

2. 사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단체대표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5)

⑤ 협회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7조(협회 기능) 협회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회회의를 대표하고 협회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 협회회의 회의는 상·하반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회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6)

제10조(비밀엄수 의무 등) 협의회회의 위원은 각 협의회회의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① 협의회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그 밖에 협의회에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표창)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공이 많은 사람이나 단체 등에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7)

사천시 조례 제112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
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 중 “정의는 다음과”를 “뜻은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
료”라 한다)의 부과액 합산금액이 월 10,000원 미만인 세대의 주
민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8)

2. “노인세대”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노인으로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3. “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4. “한부모세대”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5. “소년소녀가장세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제3조 중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로 한다.

제6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납기내 까지”를 “납부마감일 전까지”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7조(조사)** ① 시장은 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대상 세대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외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9)

사천시 조례 제112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를 “사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 ” 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을 “「의료급여법」에 따른” 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10)

제2조 중 “회계” 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 ” 로,
“및” 을 각각 “과” 로, “기타수입” 을 “그 밖의 수입” 으로 하고, “하
고” 를 “하고,” 로, “기타경비” 를 “그 밖의 경비” 로 한다.

제4조 중 “지방재정법” 을 “「지방재정법」” 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른” 으로, “의하여
” 를 “따라” 로, “및” 을 “과” 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의료시설의장” 을 “의료급여기관장” 으로, “대불금” 을
각각 “대지급금” 으로,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한다.

제7조와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 중 “준한다.” 를 “따른다.”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11)

사천시 조례 제112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제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제1조의5, 제2조제3항에 따라 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천시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복지위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12)

제2조제1항 중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를 “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로, 제2호, 제3호 중 “및” 을 각각 “와” 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및” 을 “또는”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및” 은 각각 “과” 로 하고,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라” 로 하며, “사천시사회복지실무협의체” 를 “사천시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및” 을 “과” 로,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를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姓)의 위원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을 “「사회복지사업법」” 으로,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사람중에서” 를 “사람 중에서” 로, “및” 을 “과”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협의체의 위원장은” 을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및” 을 “과” 로, “10인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협의체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를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姓)의 위원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규칙 제1조의4” 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5” 로 하며,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사람중에서” 를 “사람 중에서” 로, “및” 을 “와” 로 한다.

제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항은 제7항으로 한다.

⑥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13)

제4조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5항에 따라” 로 하며 “및” 을 각각 “와” 와 “또는”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및” 을 “와” 로, “통할한다.” 를 “총괄한다.” 로 한다.

제6조 중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로 한다.

제7조 중 “기타의”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및” 을 “와” 로, 같은 항 제2호 중 “및” 을 “과” 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라” 로 한다.

제12조 중 “관계인등” 을 각각 “관계인 등” 으로, “및 기타” 를 “과 그 밖에” 로 한다.

제13조 중 “및” 을 “또는” 으로 한다.

제15조 중 “및 관계인등” 을 “과 관계인 등” 으로, “예산 범위안에서” 를 “예산의 범위에서” 로 하고,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5조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중 “규정된 사항외에” 를 “정한 사항 외에”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14)

사천시 조례 제112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호, 제4호 중 “이라 함은” 을 각각 “이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라 함은” 은 “란” 으로 하며 “세대편입한” 을 “세대편입 한”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부모가 모두” 를 “부 또는 모가” 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해당아 출산일 기준으로 신생아 부모가 3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이혼하고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부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15)

모 중 한 사람만 3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 를 “해당아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 까지 부 또는 모와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을 말한다.” 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전학시” 를 “전학 시” 로 하고, 같은 호의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셋째 이상 자녀 고등학생 지원은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 중 한 사람만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

3. 전입대학생 지원은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 관내 대학 기숙사 입주 등으로 시 관내에 전입신고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에게 지원한다.

제5조제1항 중 “자는” 을 “사람은”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있을 시” 를 “있을 때에는” 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는” 을 “사람은” 으로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는 별표 3의 우대인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우대인증 발급대상자의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내수영장 이용료 : 월 이용자 및 일일 이용자는 「사천시 체육시설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16)

관리운영조례」 제2조제11항부터 제14호까지의 어린이, 학생, 군인, 일반인은 일반인 이용자의 수영장 개인 이용료 또는 회원 이용료로 받는 금액의 50퍼센트 할인

2.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 사천시 주관 기획공연에 한하여 30퍼센트 할인

3. 삼천포유람선 승선료 : 50퍼센트 할인

4. 항공우주박물관 관람료 : 무료

5. 종합운동장, 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야구장, 테니스장 사용료 : 50퍼센트 할인

6.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람료 : 단체관람료 적용

제10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제1호에 따른 별표 1의 출산지원금은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17)

(별표 1]

출산장려시책 지원기준(제4조제1호 관련)

지원대상	지 원 기 준
출산지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째 아 : 30만원 - 신청서에 의거 1회에 전액 지급 ○ 셋째 아 이상 : 200만원 - 출산 후 신청서 제출 시 : 10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1년(12개월) 되었을 때 : 100만원
고등학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와 셋째이상 자녀가 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시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 또는 재학 시 수업료 전액 지원(단, 학교 운영지원금 제외하며,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 중 한 사람만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도 지원)
임산부, 신생아 및 영·유아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천시 보건소 출산장려시책 및 그 밖의 계획에 따라 지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실내수영장 이용료 ○ 월 이용자 및 일일이용자는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2조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린이, 학생, 군인, 일반인은 일반인 이용자의 수영장 개인이용료 또는 회원 이용료로 받는 금액의 50퍼센트 할인 <input type="checkbox"/>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 사천시 주관 기획공연에 한하여 정액입장료 또는 30퍼센트 할인 <input type="checkbox"/> 삼천포유람선 승선료 ○ 50퍼센트 할인 <input type="checkbox"/> 항공우주박물관 관람료 ○ 무료 <input type="checkbox"/> 종합운동장, 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야구장, 테니스장 사용료 : 50퍼센트 할인 <input type="checkbox"/>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람료 : 단체관람료 적용
쓰레기봉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째 아 이상의 출산은 출생신고일(쌍생아인 경우는 신생아 별)로부터 1회에 한하여 출생아 한 명당 400리터 지원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18)

[별표 2]

전입세대 정착지원 기준(제4조제2호 관련)

지원대상	지 원 기 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input type="checkbox"/> 실내수영장 이용료 ○월 이용자 및 일일이용자는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2조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린이, 학생, 군인, 일반인은 일반인 이용자의 수영장 개인이용료 또는 회원 이용료로 받는 금액의 50퍼센트 할인 <input type="checkbox"/>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 사천시 주관 기획공연에 한하여 정액입장료 또는 30퍼센트 할인 <input type="checkbox"/> 삼천포유람선 승선료 ○ 50퍼센트 할인 <input type="checkbox"/> 항공우주박물관 관람료 ○ 무료 <input type="checkbox"/> 종합운동장, 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야구장, 테니스장 사용료 : 50퍼센트 할인 <input type="checkbox"/>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람료 : 단체관람료 적용
쓰레기봉투 지원	○두 명 이상의 전입세대는 전입자 한 명당 1회에 한하여 400리터 지원
고등학생 지원	○타 시·군·구에서 2명이상이 전입하여 시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 시 수업료 전액 지원(단, 학교운영지원금 제외)
대학생 지원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 관내 대학 기숙사 입주 등으로 시 관내에 전입신고하고 3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에 한하여 학기별 1회 100천원 지원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19)

[별표 3]

(앞면)

우 대 인 증

성 명 :

(가족성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

(유효기간 : 20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직인

(가로 8.5cm × 세로 5.5cm)

(뒷면)

- 사천시 실내수영장 할인(50퍼센트)
 - 삼천포유람선 승선료 할인(50퍼센트)
 -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할인
(정액입장료 또는 관람료의 30퍼센트)
 - 항공우주박물관 무료관람
 - 종합운동장, 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야구장,
테니스장 사용료 할인(50퍼센트)
 -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람 : 단체관람료 적용
- ※ 우대인증 가족성명에 기재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사천시공보

제370호(20)

[별지 제1호서식]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 세부신청 사항란은 해당되는 지원사항에만 기재

기 본 현 황							
신청분야	<input type="checkbox"/> 전입세대 정착지원 <input type="checkbox"/>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 <input type="checkbox"/> 출산장려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사천시	읍·면·동	리	번지	아파트 동 호	
	전화번호	자택	핸드폰				
입금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 항목 기재)							
전입세대 정착지원	전입가족 현황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기타	
<input type="checkbox"/> 공공시설이용 <input type="checkbox"/> 쓰레기봉투지원 <input type="checkbox"/> 고등학생 수업료지원 <input type="checkbox"/> 대학생 지원							
수업료 지원	학교명	학년	성명	생년월일			
출산장려	신청 항목	<input type="checkbox"/> 출산장려금 <input type="checkbox"/> 무료예방접종 <input type="checkbox"/> 쓰레기봉투지원 <input type="checkbox"/> 아동양육수당 <input type="checkbox"/> 임산부지원 <input type="checkbox"/> 공공시설이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성명(부)	생년월일					
	성명(모)	생년월일					
	신생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출생순위	<input type="checkbox"/> 첫째 <input type="checkbox"/> 둘째 <input type="checkbox"/> 셋째이상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차이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22)

[별지 제3호서식]

우대인증 발급(재발급)신청서

1. 성 명 :

2. 생 년 월 일 :

3. 우대인증 사용 가족성명()

4. 발급 신청사유

신규 분실 훼손

붙임 : 1. 분실사유서

2. 훼손시 훼손 우대인증서 매.

위와 같이 우대인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24)

사천시 조례 제112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사업에 필요한 위원회의 구성과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천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과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25)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모든 시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해야 한다.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4조(설치) 시장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사천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 제6조제3항 각 호와 같으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26)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기능
2. 어린이집 평가 및 우수 어린이집 지정
3.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시장 또는 제5조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스스로가 사임을 원한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27)

3. 6개월 이상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제5조제2항에 해당하여 위촉된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하였을 때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28)

제3장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제11조(어린이집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때에는 보육 수요를 감안하여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수요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에 장애아 어린이집, 시간 연장(24시간) 어린이집 등 특수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명칭)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13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개인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보육 사업에 적극적이고 추진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및 법에 의한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4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의 운영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 위탁할 수 있으며, 재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29)

이 경우 위탁만료 2개월 전에 계약갱신 체결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 위탁 심의 시 해당 시설의 학부모 및 보육교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조례, 위탁협약 및 시장의 지도·감독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변경, 권리의 양도나 전대 등을 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 계약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해야 한다.

⑤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30)

1. 수탁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수탁자로 지정 받았을 때
2. 수탁자가 공익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5년간 국공립어린이집을 수탁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제14조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시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17조(운영평가) ① 시장은 해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보조금지원, 위탁의 해지, 재 위탁 여부 등에 반영하고, 우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31)

제18조(보육교직원 임면 및 복무) 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관계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 어린이집의 원장은 시장이 임면하고, 보육교사 및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원장이 임면하되 임면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육교직원의 복무는 관계법령 및 보육사업 지침에 따른다.

④ 시장 및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원장은 보육교사 면직 시 시장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1. 보육아동 수 감소 또는 예산 사정으로 정원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2. 해당 보육교직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3. 그 밖의 직무태만, 아동학대 행위 등으로 보육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19조(교육) 시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의 질적 향상과 보육교직원의 교양과 자질을 높이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연 한차례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32)

제21조(보수 및 퇴직금) ① 국공립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르며, 전년도 잉여금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장과 협의하여 보수를 상향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보조금의 지급 등

제22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
2. 보육관련 행사 비용
3. 보육교직원 교육·연수 등에 필요한 비용
4.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을 위한 각종 수당
5. 어린이집 보육아동의 부담비용 중 국고보조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비용을 보조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보육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2. 평가인증 또는 인성교육이 우수하거나 취약보육을 제공하는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33)

③ 관련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어린이집의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3조(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거나, 지도·감독을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되었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5장 보 칙

제24조(재교육 및 처우개선) ①시장은 원장과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재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사연수, 선진지 견학 등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육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관계법령, 보육사업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3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천시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라 위탁한 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천시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라 임용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규칙에서 종전의 「사천시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며 이 조례 또는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35)

[별 표]

사천시 어린이집 명칭과 위치(제12조 관련)

명 칭	위 치
사천어린이집	사천시 사천읍 수양로 126
동서어린이집	사천시 동서1길 61(동동)
대방어린이집	사천시 대방2길 34(대방동)
삼천포어린이집	사천시 한내4길 107(별리동)
동부어린이집	사천시 쌍피들길 23(향촌동)
꿈피오어린이집	사천시 용현면 주문길 18
또록이어린이집	사천시 사남면 공단1로 8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36)

사천시 조례 제112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종합운동장, 체육관, 유도체육관, 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야구장, 테니스장 등)” 을 “(종합운동장, 체육관, 유도체육관, 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야구장, 테니스장, 궁도장, 인공암벽장, 풋살구장 등)” 으
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4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인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37)

4. 직장(단체) 및 체육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공연, 전람, 전시 등 문화행사

제5조제1항 중 “(종합운동장, 체육관, 유도체육관, 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야구장, 테니스장 등)” 을 “(종합운동장, 체육관, 유도체육관, 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야구장, 테니스장 ,공도장, 인공암벽장, 풋살구장 등)” 으로 한다.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9조제1항 중 “

구분	3월~ 10월	11월~2월
조기	05:00~09:00	05:00~09:00
주간	09:00~18:00	09:00~18:00
야간	18:00~23:00	18:00~23:00

” 를 “

구분	하계(3월~ 10월)	동계(11월~2월)
조기	05:00~09:00	06:00~09:00
주간	09:00~18:00	09:00~18:00
야간	18:00~23:00	18:00~22:00

” 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38)

제15조, 제16조, 제17조의 제1항 중 “(종합운동장, 체육관, 유도체육관, 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야구장, 테니스장 등)” 을 “(종합운동장, 체육관, 유도체육관, 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야구장, 테니스장, 궁도장, 인공암벽장, 풋살구장 등)” 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가 징수한다.” 를 “이를 독려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로 한다.

별지 제1호,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39)

[별지 제1호서식] [개정 08.6.30]

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주 소	(전화번호 :)		
	성 명		생년월일	
체 육 시 설	시 설 명		참 여 인 원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		사용시간	
부 대 시 설	라디오 중계		조 명	
	중 계		확성기 (마이크)	
	라디오 녹음		라 이 트	
	녹 화		난 방	
	경기(행사)촬영 기 타		냉 방	
관람료 및 입장료 발행내역	특별 관람권	원	예매처 개소 매	사용목적에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비개요
	일반 관람권	원		
	군경 학생권	원		
	초 대 권	원	대관사용료	
	일 반	원		
	군 경·학 생	원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사 천 시 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 370호 (40)

[별표 1]

사천시 체육시설 사용료

1. 기본사용료

구 분 시설별	시 기	사용구분	기 본	사 용 료(원)		비 고	
				평 일	휴 일 (토요일포함)		
사천·삼천포 체육관, 사천시유도체육관	조기	체육경기	1회(일)	8,000	10,000		
		체육이외	1회(일)	15,000	25,000		
	주간	체육경기	1회(일)	30,000	40,000		
		체육이외	1회(일)	60,000	100,000		
	야간	체육경기	1회(일)	12,000	15,000		
		체육이외	1회(일)	30,000	40,000		
사주체육관	조기	체육경기	1회(일)	4,000	5,000		
		체육이외	1회(일)	7,500	12,500		
	주간	체육경기	1회(일)	15,000	20,000		
		체육이외	1회(일)	30,000	50,000		
	야간	체육경기	1회(일)	6,000	7,500		
		체육이외	1회(일)	15,000	20,000		
사천·삼천포 종합운동장	1일	체육경기	1회(3시간)	80,000	120,000		
		체육이외	1회(3시간)	100,000	200,000		
수영장 (실내)	1일	체육경기	1회(일)	300,000	500,000		
		체육이외	1회(일)	500,000	800,000		
사천·삼천포 보조 축구장, 남일대축구장, 곤명축구장	1일	축구경기	1회(3시간)	60,000	80,000		
사등야구장	1일	체육경기	1회(3시간)	30,000	50,000		
궁 도 장	1일(1사대)	체육경기	1회(일)	20,000	25,000	신설	
인공암벽장	1일	체육경기	1회(일)	20,000	25,000	"	
풋살구장	1일	체육경기	1회(2시간)	20,000	25,000	"	
테니스장	개인	인조 마사	체육경기	1회 2시간 1면당	7,000	8,000	※ 단체는 같은 동호 회나 같은 소속의 구 성원이 10명 이상인 경 우에 적용
				"	5,000	6,000	
	단체	인조 마사	체육경기	1회 2시간 / 3면당	20,000	30,000	
			체육경기	1회 2시간 / 3면당	10,000	15,000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41)

2. 전용사용료(종합운동장, 체육관, 유도체육관, 축구장 등 대관 체육시설 구장별적용)

사용시간별	사 용 료	비 고
연 20회 이내	○ 기본사용료 × 사용 회수	
연 20회 초과	○ 기본사용료 × 초과 회수 × 0.9	10% 할인
연 30회 초과	○ 기본사용료 × 초과 회수 × 0.8	20% 할인

3. 연습사용료

시 설 별	구분	기준	사 용 료	비 고
체육관, 유도체육관	개인	1회 2시간	300원	초과 매시간당 사용료의 1/2
	단체	1회 2시간	4,000원	초과 매시간당 사용료의 1/2
종합운동장	단체	1회 2시간	4,000원	초과 매시간당 사용료의 1/2
궁도장	개인	1회 2시간	1,000원	1사대 기준
	단체	1회 2시간	1명당 500원	1사대 기준
인공암벽장	개인	1회 2시간	1,000원	
	단체	1회 2시간	1명당 500원	

※ 단체연습 : 3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4.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앰프시설	1일	10,000원	종합운동장, 체육관, 유도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동시 적용
전기 및 조명	kw	기본료+실제사용료	기본료 10,000원
냉·난방	1일	기본료+실제사용료	기본료 30,000원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42)

5. 수영장 이용료

구 분	이용자	개인(원)	단체(원)	비 고
개 인	일반인	3,500	3,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시간 2시간 ○ 단체 30인 이상 ○ 회원권 매월기준
	군인, 학생	3,000	2,500	
	어린이,경로대상	2,500	2,000	
선수훈련	일반인	1,500		
	군인, 학생	1,000		
	어린이,경로대상	500		
회 원	일반인	60,000		
	군인, 학생	50,000		
	어린이,경로대상	40,000		

6.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단위: 원)

시설별	월 회 원(일반인)		수시이용료 (일반인)	비고
	개인	단체		
실내체육관	25,000	17,500	1,800	
에어로빅장	20,000	14,000	-	
탁구장	20,000	14,000	1,500	
헬스장	30,000	21,000	2,000	
골프장	100,000	-	4,000	

- 이용시간 : 1명당 1회 2시간
- 단체는 같은 동호회나 같은 소속의 구성원이 10명이상인 경우에 적용
- 월회원 매월 기준
- 사천시 거주자 우선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43)

7. 중계 방송료 <신설 2007.2.12>

종 별	기 준	요 액	비 고
텔레비전 중계	1일	20,000원	○ 중계방송료는 주최자 측에서 부담
라디오 중계	1일	10,000원	
녹화 또는 녹음	1일	중계방송료의 반액	

8. 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 사용료 <신설 2007.2.12>

종 류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선전 또는 광고물의 게시	게시면적 1㎡당(월액)		○ 1㎡ 미만은 1㎡로 한다. ○ 15일 미만은 2분의1월로 한다. ○ 15일 이상은 1월로 한다. ○ 1등급 : 본부석 정면 위주로 한다. ○ 2등급 : 본부석 중심으로 좌우 위치로 한다.
	1등급	8,000원	
2등급	6,000원		
애드벌룬 및 유사물 게양에 의한 행위	1일 1개	3,000원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44)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액 또는 감면(제18조 관련)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전액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및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의 대회 출전일 14일 이내 훈련	전액	
사천시체육회 가맹단체 및 사천시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장 또는 협회(연합회) 정기대회(연 1회)	전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배우자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자 한명을 포함한다)	50%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및 배우자	50%	
저소득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u>한부모</u> 가족, 조손가족 및 다문화가족) 및 자녀	50%	
경로대상자(65세 이상인 자)	50%	별표 1 수영장 이용료 별도적용
어린이, 학생, 군인	50%	별표 1 수영장 이용료 별도적용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우대인증카드를 소지한 자(우대인증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50%	
다자녀가구(셋째 이상) 자녀	50%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10%	별표 1 수영장 이용료 별도적용
시장이 공익 또는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액 또는 50%	

※ 그린카드를 소지한 자에게 5% 추가 할인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45)

사천시 조례 제112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위탁받은 기관” 을 “위탁받은 자” 로 하며, 같은 조제2호 중 “사업자(장)” 을 “사업자(장소)” 로 하고, 같은 조제3호 중 “집결시켜” 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 “자라야 한다.” 를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소규모 배출업소로 오폐수 배출유량이 극히 적어 유량계 설치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유량계 설치의무를 면제시킬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46)

수 있다.”를 “오수만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유량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별도로 유량산정이 가능하다고 운영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그 기기의 조정(Calibration)을 매년 2회 이상(반기 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를 “필요한 경우, 운영자의 요청에 따라 시장이 그 기기의 조정(Calibration)을 명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 중 “처리시설 설치사업 시행자의 요청에 의해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것으로 한다.”를 “시장의 요청에 의해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하고, 그 외 폐놀류 등 수질오염물질은 사업자가 법 제32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시설설치비의 계산 기준은”을 “시설설치비의 부담은”으로 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비용부담기준을 원칙으로”를 “별표 1로”로 하며, 같은 조제3항은 삭제한다.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47)

[별지 제1호서식]

배수설비설치(변경)승인신청서				
신 고 인	상호 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 업 장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주생산품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변경)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사 천 시 장 귀 하

※ 구비서류

1. 배수설비설치내역서 1부
가. 공사실시시설계서
나. 배수설비의 폐수관거와 접속관계
다. 폐수 맨홀 복구계획서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통
3. 공정도 1통
4. 원료(연료용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 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통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48)

[별지 제2호서식]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신고서				
신 고 인	상호 및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 업 장	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일			
<p>「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인)</p> <p>사 천 시 장 귀하</p>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49)

[별지 제3호서식]

시 설 설 치 부 담 금 대 상 신 고 서

신 고 인	상호 및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배수설비사용개시일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설설치비 부담대상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사 천 시 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50)

[별표 2]

유지관리비의 계산기준

제18조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계산기준은 다음과 같다.

$$AS = aM \frac{QI}{QT} + bM \left(c \frac{QI}{QT} + d \frac{CI}{CT} + e \frac{SI}{ST} \right)$$

사 천 시 공 보

제 370호 (51)

- CI : 개별사업장의 BOD, COD 부하량의 평균치 합계
- S : SS 부하량으로써
- ST : 전 사업장의 SS부하량
- SI : 개별사업장의 SS부하량

단, 모든 사업자가 입주완료할 때까지 다음과 같은 산출기준을 적용한다.

$$o AS = aM \frac{FI}{FT} + bM \left(c \frac{QI}{QT} + d \frac{CI}{CT} + e \frac{SI}{ST} \right)$$

- FI : 입주사업장의 시설설치부담금
- FT : 입주사업장의 시설설치부담금 총액

o a, b, c, d, e : 농공지구별 특성을 감안하여 적용시켜야 할 산출계수

a : 기본요금의 유지관리비 총액에 대한 배분을

$$\left(= \frac{\text{기본요금}}{\text{유지관리비}} \right)$$

b : 처리요금의 유지관리비 총액에 대한 배분을

$$\left(= \frac{\text{처리요금}}{\text{유지관리비}} \right)$$

c : 처리요금중 유량에 대한 배분을

$$\left(= \frac{\text{유량배분요금}}{\text{처리요금}} \right)$$

d : 처리요금중 BOD, COD 부하에 대한 배분을

$$\left(= \frac{\text{BOD, COD 부하배분요금}}{\text{처리요금}} \right)$$

e : 처리요금중 SS부하에 대한 배분을

$$\left(= \frac{\text{SS부하 배분요금}}{\text{처리요금}} \right)$$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52)

(참고) 세부 계산방법

가. 사업장별 폐수량 및 오염부하(BOD, COD, SS)의 적용

- 폐수배출 사업장은 적산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폐수량을 산정 적용한다.
- 배출폐수의 오염부하량은 정기적으로 폐수를 채취하여 분석한 농도를 적용하여 분석시기·횟수 등은 입주사업장 대표자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 유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최대 발생폐수량(설치 계획 최대량)을 적용한다.
- 극히 소량의 폐수를 배출하여 유량계 설치에 의한 유량산정 및 폐수 채취가 불가능한 사업장은 동종 사업장의 폐수발생 원단위를 적용한다.

나. 사업장별 오수량 및 오염부하(BOD, COD, SS)의 산정

- 전체 오수의 배출량 및 오염부하는 공동 오·폐수처리장 유입 오·폐수량 및 오염부하에서 전체배출량 및 그 오염부하량을 감한 값으로 한다.
- 사업장별 오수배출량 및 오염부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cdot \text{전체 오수량} \times \frac{\text{사업장별 생활용수 사용량(수도사용량)}}{\text{농공단지 전 생활용수 사용량(수도사용량)}} \quad \text{또는}$$

$$\cdot \text{전체 오수량} \times \frac{\text{사업장별 종업원수}}{\text{농공단지 전 종업원수}}$$

다. 기본요금 및 처리요금의 배분율(a, b)

구 분	내 용	
유지관리비	기본요금+처리요금	a+b=1
기본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 현장관리인 인건비 · 후생복지비 · 사무관리비 :인건비×5% · 동력비중 기본요금 · 감가상각비 	$a = \frac{\text{기본요금}}{\text{유지관리비}}$
처리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력비중 사용요금 · 약품비 · 오니 처분비 · 시설유지 보수비 	$b = \frac{\text{처리요금}}{\text{유지관리비}}$

사 천 시 공 보

제 370호 (53)

- o 기본요금 및 처리요금의 내용구분은 상기 기준에 의거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공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사업장 대표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o a, b의 값을 산정하기 위한 각 항목별 비용은 환경관리공단과 협의.
- 라. 처리요금중 유량과 BOD, COD부하 및 SS부하에 대한 배분율(c, d, e)

구분	내 용	배 분 율
처리요금	다음 각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운전요원 및 보조원의 인건비, 사무관리비, 시설유지보수비, 동력비중 사용료, 약품비 및 오니 처분비의 합계	$c+d+e=1$
유량배분 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실 · 침사지, 유입펌프장 · 최초 침전지 · 관리 등 · 변전소 및 계장설비 · 조경 및 부대공사 	$c =$ 유량배분요금 처리요금
BOD,COD 부담배분 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침전지 · 폭기조 · 송풍기 등 	$d =$ $\frac{\text{BOD,COD부하배분요금}}{\text{처리요금}}$
SS부하배 분 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축조 및 오니저류조 · 오니 탈수기 등 · 건조상 등 기타 	$e =$ $\frac{\text{SS부하배분요금}}{\text{처리요금}}$

- o c, d, e의 배분율은 환경관리공단의 설계예산서 및 도면에 의해 산정한 값을 사업장 대표자와 협의 후 정한다.

상기 시설물이 분리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가능한 한 기능별로 분리하여 해당 항목에 적용한다.

※ 기타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비 산출방법에 필요한 자료는 환경관리공단과 협의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54)

사천시 조례 제112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자가 한다.” 를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다만, 시장이 소규모 배출업소로 오폐수 배출유량이 극히 적어 유량계 설치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유량계 설치의무를 면제시킬 수 있다.” 를 “다만, 시장이 오수만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유량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별도로 유량산정이 가능하다고 운영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370호 (55)

제9조제3항 중 “그 기기의 조정(Calibration)을 매년 2회 이상(반기 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를 “필요한 경우, 운영자의 요청에 따라 시장이 그 기기의 조정(Calibration)을 명할 수 있다” 로 한다.

제10조 중 “처리시설 설치사업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것으로 한다.” 를 “시장의 요청에 의해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하고, 그 외 폐놀류 등 수질오염물질은 사업자가 법 제32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 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50%” 를 “50퍼센트” 로 한다.

별표, 별지 제1호 부터 별지 제6호 까지, 별지 제8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56)

[별표]

유지 관리비의 산출기준

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AS = aM - \frac{K_i}{K_t} + bM - \frac{Q_i}{Q_t}$$

1. a, b는 상수(a+b=1, a=0.2, b=0.8)

2. AS : 원인자별 부담금액(월간)

3. M : 월간 유지관리비(직접경비 + 간접경비 + 시설투자적립금)

가. 직접경비 : 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나. 간접경비 : 직접경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자가 재정상황을 고려해 10%범위 내에서 시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다. 시설투자 적립금 :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 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금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재산가액에 일정 적립금율을 곱하여 산출

(1) $E = E_j \times F_i$

(2) E : 월간 시설투자 적립금

(3) E_j : 시설 재투자 적립금 부과 전월의 처리시설 재산가액, 단, 토지가액은 제외

(4) F_i : 처리시설별 시설재투자 적립금 적립율

4. K_t : 전체 입주업소 부지면적(m^2)

5. K_i : 개별업소 부지면적(m^2)

6. Q_t : 총 오·폐수 배출 오염부하량

$$BOD + COD$$

가. 폐수 : $(\frac{\quad}{2} + SS) \times \text{유량}$

나. 오수 : $(BOD + SS) \times \text{유량}$

7. Q_i : 개별업소 오·폐수 배출 오염부하량

$$BOD + COD$$

가. 폐수 : $(\frac{\quad}{2} + SS) \times \text{유량}$

나. 오수 : $(BOD + SS) \times \text{유량}$

8. 업소별 월간 시설재투자 적립금 부담산출

$$e = E \left(0.7 \frac{K_i}{K_t} + 0.3 \frac{L_i}{L_t} \right)$$

가. e : 업소별 시설투자 적립금 부담액

나. E : 월간시설투자 적립금

다. K_t : 전체업소 부지면적(m^2)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57)

- 라. KI : 개별업소 부지면적(m²)
 마. LT : 전체업소 배출오염 부하량
 바. LI : 개별업소 배출 오염 부하량

[별지 제1호서식]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신청서				
신 고 인	상호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 업 장	주소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주생산품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건물면적(동별)		부지면적	
승인신청사항				
1. 월간 일평균 폐수등 배출량 : m ³ /일 2.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량 BOD : mg/ℓ, COD : mg/ℓ, SS : mg/ℓ, 그 밖에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m ³ /일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사 천 시 장 귀 하				
(구비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2.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3. 원료(연료와 용수 포함한다) 사용량 및 오·폐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4. 유해물질등 처리대상이외의 오염물질 처리계획 1부 5. 자체 수질관리계획 1부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58)

[별지 제2호서식]

승인번호 제 호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승인내용및조건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59)

[별지 제3호서식]

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 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사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사 실시 설명서
2. 사업장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면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계획
5. 사업장내 우수배제계획
6. 유량계, PH,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설치예정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등 설치계획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60)

[별지 제4호서식]

승인번호 제 호	배 수 설 비 설 치(변 경)승 인 서		
상호 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승인내용및조건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변경)승인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61)

[별지 제5호서식]

승인번호 제 호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p>「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 (인)</p> <p>사 천 시 장 귀하</p>			

검사번호 제 호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		
상호 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p>「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사 천 시 장 (인)</p>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62)

[별지 제6호서식]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신고서

신 고 인	상호 및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배수설비사용개시일		
<p>「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8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인)</p> <p>사 천 시 장 귀하</p>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63)

[별지 제8호서식]

징수(분할징수)신청서					
신 고 인	상호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납부할 비용부담금				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	
부담금의 종류	년 월분	금 액			
		부담금	가산금		
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사유(증빙서류 첨부)					
<p>「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16조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인)</p>					
사 천 시 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64)

사천시 조례 제112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주택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8호부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8.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의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9. 재난·재해 안전시설의 보수 보강
10. 방범용 CCTV설치 및 유지보수
11. 입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제5조제3항 중 “500만원” 을 “1,000만원” 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지원년도 기준일 12월 31일로 한다)” 를 “다만, 제5조제1항제11호는 제외한다(지원연도 기준일 12월 31일로 한다).” 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370호 (65)

[별표 1]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지원기준(제5조제2항 관련)

단지의 규모	지원비율(전체사업비)	지원 상한금액
100세대미만	80% 이하	1천5백만원 이하
100세대이상 300세대미만	70% 이하	2천만원 이하
500세대 미만	50% 이하	3천만원 이하
500세대 이상		4천만원 이하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66)

사천시 조례 제112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에 대하여는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따른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67)

사천시 조례 제113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시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내에 두고 지역건설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 개발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68)

량을 증대하고, 부실한 건설 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른 지역의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 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 간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 부조리의 근절과 부실 설계,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등록기준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 설계와 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지역건설산업 관련 단체나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생산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69)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이유 및 내용 등 조사 계획을 조사 대상 지역건설산업체에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공개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① 시장은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 내 취업 알선 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 내 자재 및 장비우선사용) ① 시장은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 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70)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5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와 직접시공비율의 확대

제9조(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3조제4항에 따른 지역 건설산업체의 하도급비율 확대 권장
2.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 우선 고용 또는 사용 권장
3.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
4.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 내 생산자재의 관급자재 공급 또는 우선 사용 권장

제10조(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제13조의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 건설 산업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단체 또는 건설산업체
2.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산업체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71)

3.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이 가장 많은 건설산업체
4. 지역건설산업체에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한 건설산업체

제11조(예우 등)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수상한 개인, 건설산업체 및 건설업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로 건설 산업의 우대 환경을 조성한다.

1. 시정소식지, 시 홈페이지, 인터넷 뉴스 등 홍보
2. 시 주요행사시 초청 등

제12조(적용배제)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포상한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중대한 산업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건설공사의 중대한 하자로 시설물 치유가 불가능한 행위를 발생 시켰을 경우
3.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예우와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장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13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천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72)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지역개발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을 위촉할 때 어느 한 쪽의 성(姓)이 위원 총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건설산업 관련 분야에 전문학식과 덕망이 높은 학계 교수, 전문가
4. 건설산업 관련 단체나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73)

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와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설행정담당이 된다.

제18조(실무팀 구성 운영)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팀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자료수집과 위원회의 기능을 보조한다.

③ 실무팀은 팀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팀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팀장은 건설과장이 되고, 팀원은 시 건설산업 관련 부서의 6급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74)

공무원, 계약부서 6급 공무원, 건설산업 관련협회 실무책임자, 그 밖에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팀 회의에 참석한 민간인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75)

사천시 조례 제113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 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 하고,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 을 철저히 관리. 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 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가 목의 농업인 중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업인 및 「농어업 경영 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법인을 말한다.
2.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이란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76)

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식품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33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 시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1억원 미만인 경우

3. “사업자”란 농산물을 생산,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 판매 등”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가공 사업을 하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등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 감시와 농업인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진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시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 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시장이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77)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식품표시법 규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역할) ① 시민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체 또는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및 조사를 위하여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식품안전관리위원회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식품안전관리위원회에 참여하여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장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감시할 수 있다.

제6조(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4.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2년마다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창업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78)

과 기업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 훈련, 연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 세무, 회계, 디자인, 홍보 및 판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시설 기준 설정 및 점검) 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 1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 하여야 한다.

② 작업장에는 제조실과 원료보관, 제품보관, 빈 용기 보관을 위한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③ 작업장에는 유해 동식물, 먼지를 막는 설비를 설치하고 제조실에는 원료세척 및 손 세척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농가는 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시장이 점검을 할 때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식품안전추진계획) 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에서 생산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안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79)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그 밖에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이나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식품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추진계획에 근거한 정책 실시 상황을 공표한다.

제10조(감시 및 조사) 시장은 식품의 생산, 판매 등 각 생산과정에 대한 사업자의 시설 또는 공정관리에 대한 감시, 생산자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11조(생산, 판매의 정보기록관리) ① 시장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보관·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자주적인 위생관리) ①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80)

- ② 일정구역의 사업자는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고 교류를 통하여 상호 관리할 수 있다.
- ③ 일정구역의 사업자로 구성된 조직은 자율관리를 통하여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자의 정보 공개 촉진) 시장은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 시장은 시민이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식품안전에 관한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심의회 설치) ① 시장은 소규모 가공사업 지원정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시장소속으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81)

2. 그 밖에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

③ 심의회는 시민, 사업자, 전문가를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민은 1/2 이상이 되도록 하고, 이때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 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심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식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시설 및 품질관리 실태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시장에게 자문한다.

1.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소규모 식품 가공시설의 위생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3. 시장·시민·사업자 상호간에 정보공유 및 의견교류 방법

③ 위원회는 소규모 가공업 담당 공무원과 시민·전문가를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82)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회의) ① 심의회 및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심의회 및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1명과 서기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83)

[별표 1]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의 시설기준 설정

○ 작업장

- 포장실, 분쇄실(분진이 다량 발생하는 공정)은 격실로 분리되어야 한다.
- 바닥은 내수처리 및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 작업장은 자연환기 또는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발생하는 하수는 하수관(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시설로 유입되게 하여야 한다.

○ 식품취급시설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급수시설

- 수도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화장실

-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창고 등의 시설

-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84)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운반시설

-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 기타

-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품 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다.
- 하나의 업소가 둘 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할 경우로서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作業장을 함께 쓸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85)

사천시 조례 제113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법 제68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영 제38조4의 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별표 1] 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86)

규 칙

사천시 규칙 제570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70호(87)

훈 령

사천시 훈령 제287호

사천시 공무원정보화능력 평가 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4년 12월 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공무원정보화능력 평가 규정 폐지규정

사천시 공무원정보화능력 평가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